

❖ 설립목적

본 시설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노인성질환 및 치매, 중풍 등의 상태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목표

- 안락하고 행복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와 통합화 추진

❖ 원훈

노년의 삶에도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시설개요

- 시설 유형 : 노인의료복지시설
- 운영 주 체 : 사회복지법인 성요셉의 집
- 시설 명 : 성요셉노인요양원
- 소재 지 : 경남 양산시 대운 1길 111(명동)
- 규모

신관(1,987.93㎡)	구관(908.57㎡)	합계
지하 165.78㎡ 1층 802.3㎡ 2층 592.2㎡ 3층 592.2㎡ 4층 135.45㎡	A동(1-3층) 525.47㎡ C동(1-2층) 383.1㎡	2,896.5㎡

❖ 건물 설비 구조

층 별		시 설
신 관	지 하	기계실 / 전기실 / 물탱크실
	1층	사무실 / 물리치료실 / 상담실 / 다목적실 / 특별요양실 / 프로그램실 / 다목적실 / 직원휴게실 / 조리실·식당
	2층	의무실 / Care-Worker / 프로그램실 / 간호사·요양보호사실 / 요양실 / 공동욕실, 세탁물건조장 / 야외산책로
	3층	자원봉사실 / Care-Worker / 프로그램실 / 간호사·요양보호사실 / 요양실 / 공동욕실, 세탁물건조장 / 야외산책로
	4층	Guest House / 실내정원 / 일광욕실

층 별		시 설
구 관	A동 1층	기계실 / 사무실
	A동 2층	요양실 / Care-Worker / 프로그램실 / 공동욕실·세면장 / 화장실
	A동 3층	요양실 / 공동욕실·세면장 / 화장실 / 실내정원
	C동 1층	요양실 / 프로그램실 / 간호사실 / 린넨실 / 공동욕실, 세면장 / 화장실
	C동 2층	물리치료실 / 프로그램실 / 화장실 / 실내정원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문직업배상(대인/대물), 영업배상(대인/대물),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

❖ 운영규정개요

→ **입소정원 : 109명**

→ **입소에 관한 내용**

① **입소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져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시설급여)을 받음.

② **입소절차**

1. 전화 및 내방상담 2. 입소 계약서 작성 후 입소 결정

③ **입소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의사소견서, 처방전, 입소용 건강진단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각 1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에 관한 내용

①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감경대상 및 감경을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 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④ 서비스의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⑤ 월 이용료

장 기 요 양 비 용 (2:1:1)

2025년 1월1일 적용

등급	1일	계산법	일수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액	전 본보조금	총수령액	비고
시설 입소	1	일수×0.20	30	542,700	297,000	839,700	2,170,800	3,010,500	일반 대상자
			31	560,790	306,900	867,690	2,243,160	3,110,850	
		일수×0.12	30	325,620	297,000	622,620	2,387,880	3,010,500	감경 대상자
			31	336,470	306,900	643,370	2,467,470	3,110,840	
		일수×0.08	30	217,080	297,000	514,080	2,496,420	3,010,500	감경 대상자
			31	224,310	306,900	531,210	2,579,630	3,110,840	
	2	일수×0.20	30	503,460	297,000	800,460	2,013,840	2,814,300	일반 대상자
			31	520,240	306,900	827,140	2,080,960	2,908,100	
		일수×0.12	30	302,070	297,000	599,070	2,215,220	2,814,290	감경 대상자
			31	312,140	306,900	619,040	2,289,060	2,908,100	
		일수×0.08	30	201,380	297,000	498,380	2,315,910	2,814,290	감경 대상자
			31	208,090	306,900	514,990	2,393,110	2,908,100	
	3,4,5	일수×0.20	30	475,440	297,000	772,440	1,901,760	2,674,200	일반 대상자
			31	491,280	306,900	798,180	1,965,150	2,763,330	
		일수×0.12	30	285,260	297,000	582,260	2,091,930	2,674,190	감경 대상자
			31	294,770	306,900	601,670	2,161,660	2,763,330	
		일수×0.08	30	190,170	297,000	487,170	2,187,020	2,674,190	감경 대상자
			31	196,510	306,900	503,410	2,259,920	2,763,330	

⑥ 비급여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식사 재료비 (3,300원×3식×일수)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발생시 정산)

⑦ 이용료 등 수납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⑧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⑩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⑪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⑫ 이용료의 개정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 등급의 변경 시
-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 원은 입소자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⑮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 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 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⑯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입소어르신
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촉탁의 및 협약의료 기관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의료협약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촉탁의는 2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자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

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원 수 : 총 70 명
-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구분	원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 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	위생원	계
남					1	1			1	1		3
여	1	1	3	4	1	49	1	5			1	66
계	1	1	3	4	2	50	1	5	1	1	1	70

- 요양보호사 교대기준 : 3교대 (D (조출)07:00-16:00 or 08:00-17:00 / E 13:00-22:00
N 22:00-08:00)

❖ 조직도

